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9. 04. 01

개정 2022.09. 07

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58조에 근거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·투자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
 - 나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실적 또는 투자자문과 관련된 투자결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(법 제86조, 법 제98조의2, 영 제88조, 영 제99조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 등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가능)
 - 다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라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
 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
 - 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

- 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 등으로부터 받는 금전
2.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·투자자문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각 목과 같다.
 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다.
 - 나. 환매수수료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집합투자기구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.
 - 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지급된다.

제4조 (수수료 부과 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 (수수료의 부과 절차)

- ① 회사는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규약 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③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 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제6조 (설명 의무)

회사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

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8조 (투자광고)

- ①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,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 (공시)

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22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.